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1204]

[www.phomein.com]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9년 11월 18일]

[dailyking@bill36524.com]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년 10월 24일]

포 메 인 R E D 정 보 공 개 서



(주)데일리킹(DAILYKING INC.)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 .

주 식 회 사 데 일 리 킹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비동 414호, 1120호, 1121호, 1122호, 1123호, 1124호, 1125호,
1215호(영천동, 동탄실리콘엘리)

Tel. 1899-2422 Fax. 0303.3130.8367

[담 당 부 서 : 사업본부3팀 Tel.031.210.753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브랜드	주 소			
(주)데일리킹	포메인 RED 외 1개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비동 414호, 1120호, 1121호, 1122호, 1123호, 1124호, 1125호, 1215호(영천동, 동탄실리콘엘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 06. 29.	2006.11.08.	김대일	1899-2422	0303-3130-8367
	법인등록번호	131111-0166536	사업자등록번호	129-86-0372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김대일 (주)데일리킹	포메인 RED 외 1개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비동 414호, 1120호, 1121호, 1122호, 1123호, 1124호, 1125호, 1215호(영천동, 동탄실리콘엘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일	1899-2422	0303-3130-8367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황지원 (주)데일리킹	포메인 RED 외 1개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비동 414호, 1120호, 1121호, 1122호, 1123호, 1124호, 1125호, 1215호(영천동, 동탄실리콘엘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대일	1899-2422	0303-3130-836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포메인 RED)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포메인 RED	쌀국수라는 뜻을 지닌 포(Pho)와, 면이라는 뜻을 지닌 메인(Mein)의 합성어인 포메인(PhoMein)과 RED(Rice noodle, Express, Delivery의 약자)의 합성어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며, 수많은 음식 평론가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베트남 쌀국수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 호	포메인 RED OO점	점포명은 해당지역의 지명 및 연계성이 큰 건물의 이름을 적용하여 이를 상호명으로 한다.
상표(서비스표)	포(Pho)	출원번호: 제1999-0005064 호 등록번호: 제41-0067303 호
	메인(Mein)	출원번호: 제1994-0005287 호 등록번호: 제41-0031484 호
	포메인(PhoMein)	출원번호: 제2009-0003725 호 등록번호: 제41-0225070 호
	포메인(PhoMein) RED	출원번호 : 4020190056403
	포메인(PhoMein) (Rice noodle Express Delivery)	출원번호 : 4020190060674
광 고		해당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영업표시 명칭 및 그림]

상 호	영 업 표 지
포메인 RED (PhoMein RED)	 Rice noodle Express Delivery  RED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903,703	740,321	4,163,381	6,806,945	525,434	586,580
2022년	6,362,709	1,162,571	5,200,138	10,622,684	769,627	1,036,757
2023년	8,477,795	3,025,690	5,452,105	12,457,723	460,959	251,96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대일	대표이사	2006.11.~현재	(주)데일리킹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황지원	감사	2006.11.~현재	(주)데일리킹 감사	규정관리감독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인)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2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데일리킹	가맹사업 경영	2006.11.~현재	포메인 (등록번호: 20100100405 제41-0225070호)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포 (상표권)	가맹 계약서 상 부여한 권리	1999.04.20 출원 2001.04.03 등록	출원 제1999-0005064 호 등록 제41-0067303 호	(주)데일리킹	2021.04.03
메인 (상표권)		1994.06.30 출원 1996.05.22 등록	출원 제1994-0005287 호 등록 제41-0031484 호		2026.05.22
포메인 (상표권)		2009.02.25 출원 2012.01.19 등록	출원 제2009-0003725 호 등록 제41-0225070 호		2032.01.19
포메인 RED		2019.04.11. 출원 2020.09.09 등록	출원 4020190056403 등록 4016419160000		2030. 09. 09
포메인 Rice noodle Express Delivery		2019.04.18. 출원 2020.03.10. 등록	출원 4020190060674 등록 4015846720000		2030.03.1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포메인 RED]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9년 09월 01일

2. [포메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데일리킹	포메인 RED	김 대 일	2019.09.~2023.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휴맥스빌리지 4층
(주)데일리킹	포메인 RED	김 대 일	2023.11~현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비동 414호, 1120호, 1121호, 1122호, 1123호, 1124호, 1125호, 1215호(영천동, 동탄실리콘엘리)

3. [포메인 RED] 업종

영업표지	업종	
포메인 RED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쌀국수

4.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포메인 RED]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	13	-	20	17	3	20	17	3
서울	3	3	-	5	5	-	6	6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	2	-	2	2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6	6	-	10	7	3	11	8	3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	-	-
전북	1	1	-	2	2	-	2	2	-
전남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포메인 RED]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	6	-	1	-	13
2022	13	5	-	1	1	17
2023	17	2	1	1	-	17

6. [포메인 RED]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데일리킹	포메인	20100100405	쌀국수	110/2	107/1	95/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포메인 RED]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7	430,152	21,957	1,154,942	52,878	77,971	5,105	14곳 산정
서울	6	548,202	30,384	1,154,942	52,878	228,433	16,288	6곳 산정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8	415,437	18,568	1,129,109	35,421	127,347	7,074	8곳 산정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2	-	-	-	-	-	-	5곳 미만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7개가 아닌 실제 1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9. [포메인 RED]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포메인 RED]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7	883일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3년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은 18,889,486원이며, 해당 금액에는 포메인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비공개)	18,889		(비공개)	-
광고	-	 (비공개)	18,889		(비공개)	-
판촉	-	 (비공개)	0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데일리킹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 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포메인 RED]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 됩니다. (부가세 포함)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외부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9,800				
가맹비	16,500	계약 체결 후 즉시	가맹계약서 제10조	가맹점모집을 위한 소요비용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즉시	교육 시작 1일 이전까지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부가세 포함

포메인 레드 가맹계약서 제9조(가맹가입비) 내 ②항

② 가맹가입비에는 점포개설에 따른 최초 훈련비·입지선정 및 장소선정 지원비·가맹사업 운영 매뉴얼 및 서비스매뉴얼 제공비 등을 포함하며, 가맹가입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가맹가입비의 반환)

- ① 가맹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사에 서면으로 가맹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하는 가맹가입비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본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② 가맹점은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가입비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금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가입비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가입비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의해 본사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비

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 후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조리 및 가맹점 운영 등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및 기술이전을 위하여 당사 교육장에 입소하여 최초 교육을 받을 때 소요되는 경비(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로서 당사에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지급기한은 교육 신청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1일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됩니다.

-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에게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즉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포메인 레드 가맹계약서 제12조(보증금) 내 ②항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본사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이천사백 팔십만원정 [24,800,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24,800
가맹비	16,500
교육비	3,300
보증금 (부가세 없음)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8,990]	8,899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약 57,200	5,720	계약 40% 중도 40% 잔금 20%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주방설비	협력업체	약 21,505	2,150	계약 90% 잔금 10%	상품 미공급 시	주방물품 일체
간 판	협력업체	약 6,600	해당없음	계약 90% 잔금 10%	상품 제작 전	LED+갤브 프레임 기준
기타	협력업체	약 3,685	해당없음	완비 후	개점 전	소모품비, 키오스크, POS 및 각종 운영용품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본부의 지정업체와 공사 관련 감리계약서를 작성한 후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당 38만5천원(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총 감리는 가맹본부가 관리, 감독합니다.

또한 주방 설비의 경우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주방도면 설계 및 검수의 대가로 220만원(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며 간판의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진행 할 경우 설계 및 디자인의 대가로 220만원(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관련 진행에 있어 반환을 요청할 시 그간 소용된 비용은 제외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사업본부 1,2,3팀 (전화:031-210-7511, 7521,7531)	가맹상담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점포지를 도출하는 과정은 가맹희망자가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단, 그 이전에 본사의 동의를 득해야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본사의 계약·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가맹계약 체결된 이후에 교육 가능 - 운영교육과 주방 조리교육 별도 진행	- 동종업 운영자가 아닐 것 - 위생교육 수료자 - 각종 채무 불이행자가 아닐 것 - 요식업 운영 마인드를 갖춘 자 - 각종 서비스업 유경험자 우대
종업원	- 가맹점 사업자가 채용한 인력	- 만19세 이상 - 보건증 소지자 -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 각종 서비스업 유경험자 우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포메인 RED]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포메인 RED] 가맹계약 관련 진행에 있어 가맹가입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본사는 본사의 비용으로 가맹가입비에 대한 피해보상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사에 당일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부담에 대한 세부 부담 기준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90]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990	익월 5일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50:50	광고실시 전	광고실시 전	광고 대금지불	전국규모의광고
교육훈련비		실비청구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간판비용	협력업체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리모델링 비용		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9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복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로열티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 고
식자재관리	전용상품(식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수시	문의: 당사 사업본부 1,2,3팀 (031-210-7511, 7521,7531)
매출관리	매출 저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매출 분석 실시	수시	문의: 당사 사업본부 1,2,3팀 (031-210-7511, 7521,7531)
회계관리	가맹점 별 매출확인 및 총 가맹점의 평균 매출 확인	수시	문의: 당사 경영지원실 (031-210-7500,7581)
재고관리	식자재 로스율 확인 및 일 평균 식자재 사용량 확인	수시	문의: 당사 사업본부 1,2,3팀 (031-210-7511, 7521,753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시 가맹가입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① 본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는 가맹점에게 제10조 제 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포메인 RED 가맹계약서(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7조 1항]

- ② 본사가 가맹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및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가맹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포메인 RED 가맹계약서(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7조 6항]

3) 가맹점 운영권 양도,양수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포메인 RED]운영권 양도 시 양수인은 가맹가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금 오백만원 및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점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제12조 제2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정산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단, 본사가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및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본사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가맹점에게 제시하고, 가맹점은 이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포메인 RED 가맹계약서(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7조 2항]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포메인 RED]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원부자재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포메인 RED]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포메인 RED]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 2) 당사가 [포메인 RED]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포메인 RED 메뉴판에 기재된 품목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위반시 책임
동종업 경쟁업체 및 업장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에그롤	6,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짜조	6,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포메인 치킨윙 4PCS	7,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오리지널 스프링롤	7,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분보짜오	16,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분짜	16,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매운 해산물 볶음 쌀국수	15,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해산물 팟타이	15,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닭고기 팟타이	15,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소고기 볶음밥	15,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칠리 볶음밥	15,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돼지고기 덮밥	15,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닭고기 덮밥	15,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포메인 쌀국수 S	12,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포메인 쌀국수 L	14,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스파이시 포 S	13,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스파이시 포 L	15,0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프리미엄 소고기 쌀국수 S	15,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프리미엄 소고기 쌀국수 L	17,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매운 해산물 쌀국수 S	14,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매운 해산물 쌀국수 L	16,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해산물 쌀국수 S	13,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해산물 쌀국수 L	15,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닭고기 쌀국수 S	12,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닭고기 쌀국수 L	14,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레드 포 S	15,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레드 포 L	17,500 원	당사 메뉴판	2022년 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베트남 쌀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포메인	해당없음
	포메인 RED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5천 세대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포메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포메인 RED]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6	44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포메인 RED]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가맹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서 갱신 시 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1]년씩 연장됩니다.

[포메인 RED 가맹계약서 제5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

② 본사는 가맹점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1) 본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본사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본사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계약 갱신 시 본사는 가맹점에게 더 이상의 가맹가입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가맹점에게 계약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갱신기준이 포함되어야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하기로 한다. 본사는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갱신 여부를 고지한다.

⑤ 본사가 제2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사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사나 가맹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사나 가맹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본사나 가맹점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가맹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제2항의 갱신 절차과정이 생략되어 계약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1]년씩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사항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 5 조 2항 1호
○ 다른 가맹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 5 조 2항 2호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1) 본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본사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본사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5 조 2항 3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9]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메인 RED 가맹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

- ① 본사 또는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사유 (일반해지)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에서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사의 가맹사업 활동에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 6 조 1항
○ 가맹점이 노후된 점포의 설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 본사가 정한 메뉴이외에 가맹점이 임의적으로 메뉴를 추가 또는 변경, 삭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 본사간의 금전 지급의무(상품대금, 로열티 등)를 지체하는 경우	

○ 본사에서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이행 및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고객의 불만사항을 확인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한 불만사항을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시키는 경우	
○ 브랜드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주요상품·자재에 대해서 가맹점이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쟁사로부터 납품받거나 기타 자체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의 점포·설비를 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브랜드의 동질성을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 본사의 동의 없이 가맹점이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매장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경우	
○ 본사의 동의 없이 가맹점이 임의적으로 운영매뉴얼을 변경, 변질하여 운영하는 경우	
○ 본사가 정한 제품의 규격을 기준보다 초과하거나 혹은 부족하게 판매하는 경우	
○ 본사가 정한 조리 레시피를 가맹점이 적용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 변질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 없이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 본사가 정한 상품의 판매가격을 가맹점이 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	
○ 본사가 실시하는 매장점검을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의 영업환경 개선 및 원활한 가맹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본사의 일반적인 운영정책에 대해서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본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 본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 (즉시해지)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6 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내용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위 표에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6조 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 관련법 제정·개정 시	제 37 조 1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본사에 서면통보 → 당사 담당팀 검토(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사와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최종승인)	문의 : 당사 사업본부1,2,3팀 (Tel. 031-210-7511, 7521, 7531)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본사가 정한 교육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가맹점처럼 가맹가입비에 대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메인 레드 가맹계약서 제24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 ① 가맹점은 본사의 승인을 얻어 점포의 영업을 양도, 전대(轉貸)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승인은 2개월 전에 본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③ 본사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양수인, 전차인(轉借人)은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가입가입비는 부담(腐談)하지 않는다.
- ⑤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하며, 가맹가입비를 본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양수인은 본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본사의 행정적 실비, 소정의 교육비 등)은 본사가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양수인은 본사에게 양수에 따른 교육비용 (1인, 삼백만원, 부가세 별도)을 납부하고 반드시 교육을이수 하여야 하며 영업양수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금(金) 오백만원을 본사에 지급하여야한다
- ⑧ 본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는 가맹점에게 제10조 제 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3개월 이내	본사 교육이수
대리행사	본사 심사 후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 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대한민국 내에서 [포메인 RED]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베트남 쌀국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사업본부 1,2,3팀 (031-210-7511) (031-210-7521) (031-210-753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2:00(13시간)	주 6일 이상 (일요일, 공휴일 제외할 시 본사에 서면 통보할 것)	문의 : 당사 사업본부1,2,3팀 (Tel. 031-210-7511 ,7521,75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사업본부 1,2,3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1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방문	사업본부1,2,3팀	
친절도(1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방문	사업본부1,2,3팀	
품질 관리 (1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방문	사업본부1,2,3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포메인 RED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상품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사업자의 찬반 통지 → 찬성 50% 이상인 경우 실시 → 비용 분담 안내	스폰서 활동 및 TV 신문 광고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공고	75%	25%		
	가맹점 모집공고	100%	-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0%	할인금액 (소비자가) 100%	판촉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사업자 찬반 통지 -> 찬성 70% 이상의 경우 실시 -> 비용 분담 안내 (단, 70% 이상 미동의시 동의를 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 실시 가능)	-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0%	증정상품 출하가 100%	"	"
	팜플렛 등 제작	관측물 제작비용 0%	관측물 제작비용 10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지역단위 개별광고		-	100 %	행사 계획 본사에 통보 → 가맹점의 행사 진행 → 행사 완료	가맹점 단독 행사 진행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가맹점사업자당 일정금액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월별 관측 행사
할인카드 (포인트, 쿠폰)		-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전액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와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포메인 레드 가맹계약서 제23조(관 측)

- ① 본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할인판매, 경품제공, 시식회, 이벤트 등과 같은 관측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관측활동의 횟수·시기·방법·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사업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본사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및 관측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의 제작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한다.

- ④ 가맹점은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하는 가맹점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은 본사와 협의하여 판촉활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고객마일리지적립 및 활용은 고객 재방문유도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판촉행위로 모든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고객마일리지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포메인 레드 가맹계약서 제39조(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 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위약벌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의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은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과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국내에서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본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은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약 80일 내외	17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서울보증보험 체결	계약 체결 당일	13페이지 참조
점포 실측 / 설계	- 투자비 산출	약 7일	15페이지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약 7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5일	
교육 실시	- 매장 운영 교육 실시	약 5일	
오픈 준비	- 상품 준비 및 가오픈	약 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또한 [서울보증보험] 체결 시, 발급한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0조)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할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본부 1,2,3팀 (031-210-7511, 7521,753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사업본부 1,2,3팀 (031-210-7511, 7521,753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 부진 경영 지원	매출 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 지원	직전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이 2천만원 미만 가맹점	가맹계약 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포메인 RED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음식 조리 및 매장운영 키오스크, POS 교육	이론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의무 / 필수
메뉴 교육	신메뉴 조리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수시	의무 / 필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포메인 RED]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5일(운영교육3일/주방교육2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1일	무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영업 양수도 교육	5일(운영교육1일/주방교육4일)	3,300	영업 양수도 계약 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4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에버랜드 직영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2	경기	가평휴게소 상행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540번길 51
3	경기	가평휴게소 하행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544번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1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836,22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
사 사업본부1,2,3팀(031-780-1560,1511,156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
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
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phomein.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 2021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